##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03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진종오·김태호·서천호

백종헌 • 정성국 • 한지아

김미애 · 서명옥 · 김장겸

곽규택 • 이종배 • 최보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체육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암표가 성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 법률 제 호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3(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벌칙)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7조의3(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람
	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
	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
	<u>정판매(입장권등을</u>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
	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
	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
	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u>&lt;신 설&gt;</u>	제19조(벌칙) 제7조의3제2항을 위

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